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5111226 판결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유현우, 구태회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오경록

변론 종결 2024. 6. 21.

판결 선고 2024. 8. 9.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9,138,000원 및 그 중 20,178,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3.부터, 48,96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21.부터, 각 2024.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에게 20,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3.부터 2024.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1,638,000원 및 그 중 62,678,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3.부터, 48,96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62,678,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5.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21. 9. 17. D과 사이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F,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H님과 전기 인입문제를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계약에 임하는 것이며, 매수인은 계약 후 매도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기재 옆에 서명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1. 10. 20. 피고와 사이에 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외2필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 시행대행 계약서

1. 프로젝트명 : E(외2필지) 단독주택 신축공사
2. 대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F, G(총 3필지)
3. 공사 규모 : I건물 2층 단독주택 2동(총 4가구)
6. 사업비 :

가. 총 공사비 : 구억육천육백만원(₩ 966,000,000/부가세별도)

나. 설계비 : 칠천만원(₩ 70,000,000/2동/부가세별도)

다. CM 용역비 : 일억삼백육십만원정(₩ 103,600,000/부가세별도)

라. 총 사업비[가+나+다]: 십일억삼천구백육십만원(₩ 1,139,600,000/부가세별도)

■ 단, 대금의 지급 시기는 [별첨 1]에 따른다.

"갑" 건축주

상호: A, B

"을" 건축공사 시행대행자

상호: (주)C

[건축공사 시행대행 일반 계약조건]

제2조[권리와 의무]

1. 본 건축공사는 갑의 건축 공사이며, 을은 본 계약에 의거 갑의 건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 제반 업무를 대행할 권리가 있다.
2. 을은 본 계약의 의무로 프로젝트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 기본적인 자문과 시공단계에서 시공사선정 및 관리를 진행하며, 갑은 을에게 프로젝트 수행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을은 공사대금 지출관리 및 집행대행 의무를 지닌다.

제3조[을의 업무범위]

1. 기획단계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자문
2. 설계단계(중략)
3. 시공단계(중략)
4. 갑을 대신한 공사대금의 지출관리 및 집행대행
6. 기타 갑이 요구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업무 지시사항.

제6조[갑의 계약 해제 및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을이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 기일 내 공사를 완공할 가망이 없을 때

제8조[계약 해지 시의 정산]

1.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진행된 공사의 기성 비율에 따른 정산을 실시한다.
2. 다만, 공사 착공전에 갑의 귀책사유 또는 변심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및 시행대행 계약금, 착수금 등 일체의 금원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하지 않는다.

[별첨1] 시행대행(건설사업관리) 및 공사비 지급 기준 및 일정

계약금	10%	113,960,000원	시행대행 용역계약시 계약시 : 4천만원 2021.11.1. 잔액지급함
착수금	10%	113,960,000원	시공사 계약시
중도금 및 잔금	80%	911,680,000원	시공사 기성 청구금액 확정시 마다 지급
총합계	100%	1,139,600,000원/부가세별도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계약금으로 2021. 10. 20. 40,000,000원, 2021. 11. 1. 73,9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 2. 27. 계약금의 부가세로 11,396,000원, 총 125,35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1. 11. 29.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J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 2022. 4. 4.(건축 인허가 일자에 따라 변동가능함)
4. 준공예정년월일 : 2022. 10. 30.(7개월 : 건축 인허가 일자에 따라 변동 가능함)
5. 총계약금(총공사비) : ₩ 979,000,000(VAT 포함)
6. 계약금 : ₩ 97,900,000(VAT 포함/ 총계약금의 10%, 계약 시 지급)
7. 선금 : ₩ 97,900,000(VAT 포함/ 총계약금의 10%, 착공 허가득 후 7일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 : 시공사 기성 청구금액 확정 시 마다 지급

마. 원고들, K 건축사사무소의 L, 피고는 2021. 11. 30. 건축주인 원고들이 L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설계 용역 업무를 위탁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설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 ₩ 64,500,000원(부가세 별도)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원고들이 피고에게 설계용역비를 지급하면 피고가 아래 각 금액의 지불시기 및 금액 조건에 따라 해당 금액을 L에게 지급한다.

② 원고들의 대금지급 채무는 A, B이 연대하여 지급한다.

③ 설계용역비는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계약시(10%) ₩ 6,450,000 계약 후 즉시

계획설계 완료시 (30%) ₩ 19,350,000 건축주 최종건평 완료 후 5일 이내

바. 피고는 2021. 11. 30. 원고들로부터 위 설계용역계약의 부가세가 포함된 계약금 7,095,000원을 입금받아, 2021. 12. 2. L에게 위 7,095,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22. 2. 7. 19,350,000원, 2022. 2. 8. 1,935,000원을 입금받아, 2022. 2. 9. L에게 위 21,285,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원고들은 2021. 12. 24. M과 사이에 지형지물현황측량, 개발행위변경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도서작성에 관하여 계약금액 3,500,000원(부가세 포함하여 3,850,000원, 계약시 1,925,000원, 허가완료 시 1,925,000원 지급)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원고들은 2022. 2. 27. (주)N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구조안전진단에 관하여 용역금액

3,000,000원(부가세별도, 계약시 1,500,000원, 실시설계 납품시 1,500,000원 지급)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원고들은 2022. 3. 7. J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부대토목공사 및 지하주차장(2호)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O동 단독주택의 부대토목공사 및 지하주차장(2호)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22. 3. 4.

5. 총계약금(총공사비) : ₩165,000,000(VAT 포함)

6. 계약금 : ₩48,950,000원(VAT 포함)

■ 공사비 지급기준 및 일정<부가가치세 포함>

1. 착수금	29.67%	₩ 48,950,000	계약시
2. 중도금 1차	29.67%	₩ 48,950,000	옹벽 변경 및 지하 주차장 공사의 30%완료시
3. 중도금 2차	29.67%	₩ 48,950,000	생략
4. 잔금	10.99%	₩ 18,150,000	생략
총합계	100%	₩ 165,000,000	생략

-공사계약 특수 조건-

1. 일반사항

1) 공사 기간 및 내용 : 계약일 이후 공사를 위한 현장의 전기, 수도(건축주신청) 인입후로부터 약 50일 예정

차. 원고들과 피고는 2022. 3. 7. 위 부대토목공사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독주택 부대토목 공사 시행대행 계약서]

3. 공사규모 : 옹벽철거 및 신설, 지하주차장 신설(2호), 부대토목공사

6. 사업비:

가. 총공사비 : ₩150,000,000(부가세별도)

나. CM 용역비 : ₩15,000,000(부가세별도)

다. 총 사업비[가+나] : ₩165,000,000(부가세별도)

[시행대행 및 공사비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

1. 계약금59.34%	공사비	일금 구천칠백구십만원정	(₩97,900,000)	시행대행 용역 계약 시
CM 비용	일금 구백칠십구만일천일백원정	(₩9,791,100)		
소계	일금	(₩107,691,100)		

1. 계약금59.34%	공사비	일금 구천칠백구십만원정	(₩97,900,000)	시행대행 용역 계약 시
	일억칠백육십구만일천일백원정			
2. 중도금29.67%	공사비	일금 사천팔백구십오만원정	(₩48,950,000)	옹벽 일부철거 및 지하주차장 공사의 60% 완료 시
CM 비용	일금 사백팔십구만오천오백오십원정	(₩4,895,550)		
소계	일금 오천삼백팔십사만오천오백오십원정	(₩53,845,550)		
3. 잔금10.99%	공사비	일금 일천팔백일십오만원정	(₩18,150,000)	옹벽 일부철거 및 지하주차장 공사의 100% 완료 시
CM 비용	일금 일백팔십일만삼천삼백오십원정	(₩1,813,350)		
소계	일금 일천구백구십육만삼천삼백오십원정	(₩19,963,350)		
4. 총합계액100%	공사비	일금 일억육천오백만원정	(₩165,000,000)	1. CM 용역비 포함: 총공사비의 10%, 일금일천육백오십만원정 (₩16,500,000)2. 최종 공사비는 토목설계 완료 후 산출하여 확정되는 금액으로, 확정금액으로 최종 정산함.
CM 비용	일금 일천육백오십만원정	(₩16,500,000)		
공사비	일금 일억팔천일백오십만원정	(₩181,500,000)		
CM 비용				

카. 원고 A는 P조합개포동지점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2021. 12. 22. 위 계좌로 대출금 9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 계좌에서 2021. 12. 30. M에 1,925,000원, 2022. 2. 29. (주)N에 1,650,000원이 이체되었다. 2022. 3. 7. 위 계좌로 대출금 89,000,000원이 실행되어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2022. 3. 7. J에 97,900,000원이 이체되었다.

타. 원고들은 2022. 4. 19.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2022. 6. 9.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파. 원고 A는 2022. 8. 19. J과 사이에 다음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J은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양도인 J

양수인 A

- 양도채권의 표시-

양도인이 양수인인 건축주 A로부터 2022. 3. 7. 양도인의 주식회사 Q계좌로 송금받은 공사대금 97,900,000(부가세포함)원 중 50%를 양도인의 회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C가 보관을 요구하여 2022. 3. 7.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건축공사 계약이 파기되어 공사가 불가하게 되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주식회사 C에게 보관시킨 보관금 반환채권 48,960,000(부가세포함)원정.

하. 원고들은 2022. 5. 13.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과 관련 한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2, 3, 4, 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인, ① 이 사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토지 잔금 및 건축비 대출 수행 업무, ②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전기 인입 문제해결 업무, ③ 설계용역비 지급관리 및 공사대금 지출관리 및 집행대행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피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및 제5항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 기일 내 공사를 완공할 가망이 없을 때'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관하여 2022. 5. 13. 무렵 피고에게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의 1/2인 62,678,000원(= 125,356,0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J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97,9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근거 없이 J에게 위 계약금의 50%인 48,950,000원의 보관을 요구하여 J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착공에 이르지 못하자 J은 위 계약금 전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보관한 위 48,950,000원을 원고 A에게 보관금 채권의 양도 형태로 반환하였는바, 피고는 J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 A에게 위 48,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바, 피고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시행대행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 일체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피고가 2022. 3. 7. J로부터 받은 48,960,000원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관련 금원이 아니라 이 사건 추가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추가 시행대행계약 역시 파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 시행대행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위 금원 역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상 계약금 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 5, 6, 7, 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관련 자금 대출문제나 자금 집행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독촉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와 같은 업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 해태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던 주된 이유는 이 사건 토지에 전기를 인입하는 문제에 관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 H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부터 H과의 전기 인입문제의 존재가 특약사항에 기재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가 위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이 사건 토지 전기인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던 중에 원고들이 피고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위 H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금 대출, 전기 인입,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제6조 제3항)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 기일 내 공사를 완공할 가망이 없게 되었다고(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제6조 제5항)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계약금의 몰취 여부 및 범위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은 원고들의 변심으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제8조 제2항은 '공사 착공 전에 원고들의 귀책사유 또는 변심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및 시행대행 계약금, 착수금 등 일체의 금원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위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 원고의 단순 변심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중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인 11,396,000원에 한하여 몰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은 이 사건 추가 시행대행계약에서와는 달리 계약금을 공사비 및 설계비와 시행대행비용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상 계약금 지급 이후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때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착수금 113,960,000원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들과 피고는 위 착수금으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의 계약금 지급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계약금에 총 공사비, 설계비, 시행대행 용역비가 그 비율에 따라 포함되어 있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상의 계약금에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총사업비는 시행대행계약시 계약금 10%, 시공사 계약시 착수금 10%, 시공사 기성 청구금액 확정시 마다 중도금 및 잔금 8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가 수행하여야 할

이 사건 사업 관련 시행대행 업무가 건축공사 착공 이전에도 상당 부분 수행되어야 하고, 건축공사의 기성고 비율과 시행대행 업무의 업무 수행 완료 비율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 시행대행 용역비를 건축공사 기성고에 따른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계약금 몰취금의 감액 여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75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제8조 제2항의 계약금 반환청구권 상실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계약금(125,356,000원)이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대행 완료를 전제로 받게 될 피고의 시행대행 용역비(103,600,000원/부가세 별도)보다 많은 점,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 이 사건 사업의 공사착공 전에 종료된 점, 피고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이미 수행한 업무,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정한 동기, 그 예정액의 규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 종료된 구체적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인 계약금 상당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85,000,000원으로 감액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178,000원 $\{=(125,356,000\text{원} - 85,000,000\text{원}) \div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양수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개설한 원고 A의 계좌로 대출이 실행되어 2022. 3. 7. 89,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대출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는 같은 날 시공사인 J에 위 계약금에서 부가세가 가산된 97,900,000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는 원고들이 J에게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추가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인 97,900,000원을 J에 착오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추가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총 107,691,100원으로 그 금액이 상이한 점, ③ 위 97,900,000원을 원고 A로부터 송금받은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48,96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J도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이상 원고 A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원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가 피고에게 2022. 3. 7. 송금한 97,9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J로부터 위 금원의 50%에 해당하는 48,9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J에게 위 48,96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J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위 48,960,000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 채권 양수인인 원고 A에게 위 48,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9,138,000원(= 20,178,000원 + 48,960,000원) 및 그 중 20,178,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2022. 5. 13.부터, 나머지 48,9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 4. 21.부터(원고 A는 이 사건 양도계약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 A가 이 사건 양도계약일 무렵 피고에게 위 금원 지급에 대한 이행최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에게 20,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2.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9.까지는

재판장판사김판사

판사이판사

판사박판사

1) 계약서에는 9,79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97,900,000원의 오기로 보임.